

제 239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3.13.)

#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래만]

# 목 차

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 비용부담 조례안 .....	16
5	거창군 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4
9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8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67
11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	80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제정이유

- 군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1) 군정 주요현안,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제안·심의 등
- 나. 위원회 구성을 정함(안 제3조)
  - 1) 30명 이내,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호선
  - 2)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군민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 하여 군수가 위촉
- 다.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제6조)
- 라.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간사, 의견청취를 정함(안 제7조~10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2019년 1차 추경 시 예산 4,2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14.~2.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가. 민선 7기 『더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열고 거창군 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사업,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제안·심의 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나.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절감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다.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군민행복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수당

나. 관련 조문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 태 정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부위원장 변경(안 제2조제2항)
  - 1) 기획예산담당관 ⇒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
-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 변경(안 제2조제2항)
  - 1) 의안제출 주무실과장 ⇒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
- 다. 당연직 위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 1)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  
⇒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생략함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의결을 위한 조례로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순화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 위촉제한과 해촉사유,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하여 고문변호사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1)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고문변호사 위촉제한 근거 신설(안 제2조제2항)

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 고문변호사 임기 변경(안 제4조제1항)

1) 1년 ⇒ 2년

라. 고문변호사 해촉 근거 신설(안 제5조)

-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거나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마. 이해충돌행위 금지 사항 신설(안 제6조)

-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 또는 자문을 하거나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바.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금액과 시기 변경(안 제9조)

- 1) 지원금액 : 5천만원 ⇒ 2천만원
- 2) 지원시기 : 판결 이후 지급 ⇒ 피소 이후 지급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8,200천원 확보

다. 합 의 : 예산담당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27.~2019. 1.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본 조례는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 심판사건, 법령 해석·적용 등에 관한 자문과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을 위해 매년 고문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나. 고문변호사 위촉제한과 해촉사유,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을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며, 소속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자문수당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66,000
	소송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20,000
	총 계	18,200	18,200	18,200	18,200	18,200	91,000

3. 관련 의견 : 고문변호사 위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하여 고문 변호사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 태 정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 현행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입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고문변호사 여부 가리지 않는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민사사건의 경우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을 것
3. 형사사건

가. 불기소처분 될 경우에는 사유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것

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개정이유

-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조건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부담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3. 주요내용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 1) 폐수 등 유입처리의 승인 등의 내용(안 제3조)
  - 2) 배수설비의 설치 통지의 내용(안 제4조)
- 나.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등의 내용(안 제5조)
- 다. 폐수 등 배출 신고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51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제1회추경예산 34백만원 확보예정/운영비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2. 8.~12. 27.
    - 나) 예고결과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붙임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 5. 검토의견

- 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나. 입법예고기간 본 조례 제정은 기업에 부담을 주어 직원채용 중단 또는 인력감축 사유가 되므로 조례제정 제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기업체의 사용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 60%(현재 14%) 도달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 일부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다.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사용료 산출 및 지원기준

### 사용료 산출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처리시설 사용료(BS)

$$BS = M \times \left\{ 0.5 \times \frac{BLi}{\sum_{i=1}^n BLi} + 0.5 \times \frac{F(Li)}{\sum_{i=1}^n F(Li)} \right\}$$

가. M: 월간 사용료 = 유지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1)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 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_i \times F_i \times R$$

· E<sub>i</sub>: 시설 설치 비용

· F<sub>i</sub>: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 2/1,000

· R: 물가상승률(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나. BL<sub>i</sub>: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1) BL<sub>i</sub> = 유량(m<sup>3</sup>/일)×[BOD+COD+SS+T-N+T-P농도(mg/ℓ)]/1,000

2)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입 처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F(L<sub>i</sub>):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F(L_i) = a \cdot Q_i \times \left( \frac{BOD_i + COD_i}{2} + SS_i + T-N_i + T-P_i \right) / 1000$$

1) Q<sub>i</sub>: 배출 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 등의 실제 배출유량

2) BOD<sub>i</sub>, COD<sub>i</sub>, SS<sub>i</sub>, T-N<sub>i</sub>, T-P<sub>i</sub>: 개별사업장의 BOD, COD, SS, T-N, T-P 농도

3) a: 유량 누진계수

유 량 (m <sup>3</sup> /일)	a
$Q_i \leq 200$	1.0
$200 < Q_i \leq 500$	1.1
$500 < Q_i$	1.2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 사업자

-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2) 오수의 경우

###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N 30 mg/ℓ (기숙사 40 mg/ℓ)
- T-P 3 mg/ℓ (기숙사 4 mg/ℓ)

## 사용료 지원금(감면) 산출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

$$CS = a \times Qi \times 539 \text{원}/m^3$$

가. CS: 월간 사용료

나. a: 누진계수

(오수배출업소 a=1.0, 폐수배출업소 a=1.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업소 a=1.2)

다. Qi: 업소별 월간 배출유량

라. 539: 연간유지관리비 252,285,000원 / (30일\*12개월)=700,792원/일  
700,792원/일 ÷ 1,300m<sup>3</sup>/일=539원/m<sup>3</sup>

### 2.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공식

가.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

$$\frac{\text{개별 사업장 시설개선충당금}}{\text{시설개선충당금}} = \text{월간 시설개선충당금} \times \frac{Qi \text{ m}^3/\text{일}(\text{개별사업장 배출유량})}{\sum Qi \text{ m}^3/\text{일}(\text{전체사업장 배출유량})}$$

나. 월간 시설개선충당금(E):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1]의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의 시설개선충당금 항목을 적용한다.)

다. 배출유량: 사용료 산출기준[별표 1]의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 방법의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을 적용한다.

### 3.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오수배출업소의 사용료 지원금은 거창군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에 따른 요금과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2.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공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오수·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폐수배출업소기준(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을 적용한다.

## ● 관련법령 발췌

### □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64호, 201. 6. 12, 일부개정]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거창군 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개정이유

- 이 조례에 따른 기업의 지원기준 중 하나인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하여 승강기 산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시고용인원 증명 근거를 변경함(안 제2조제13호가목)
  - 1) 기업체에서 제출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
  -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28.~2.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에서 기업지원 기준중 하나인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하여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나.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2019.1.10. 개정)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개정 전]

9.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5.~17. (생략)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생략)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90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제20조(계약의 내용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派遣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6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현행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승강기벨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승강기벨리”(이하 “벨리”라 한다)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승강기”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부품 소재 또는 부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설치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업집적”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기업지원시설이 벨리에 집적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연구 인력·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전기업”이란 타 시·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벨리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투자기업”이란 이전기업, 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13.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4. “집단화”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벨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벨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벨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
2. 승강기산업집적화 단지, 연구소, 생산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3. 승강기 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상업화 기술개발
4. 승강기대학 및 승강기R&D센터 특성화, 국제교류 및 협력, 기업정보화
5. 승강기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임대사업
6. 승강기 인력양성, 승강기산업 창업보육, 승강기산업 생산지원 확충사업, 승강기제품 시험·인증사업
7.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교류협력·마케팅·홍보·전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업시설용지 등 지원)** ① 군수는 벨리 안의 토지나 투자 희망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승강기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승강기산업체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본사, 공장, 연구소,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벨리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 입주계약 또는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벨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집단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브랜드 생산 및 마케팅 지원)**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한국형 중·고속형 표준모델인 공동브랜드를 개발 및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개발 및 국내외 시장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제품 홍보, 각종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물류비 손실보전)** 군수는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 손실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체의 벨리 입주와 벨리 내 입주 승강기산업체의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각종 부대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또는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세제상의 지원)** 군수는 벨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승강기R&D센터 지원)** ① 군수는 승강기R&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강기R&D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

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3장 투자유치 승강기산업체의 사후관리

**제15조(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사항을 포기 또는 축소하거나 사업계획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토지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를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공장 등의 이전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축소하는 경우
8. 사업계획서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 이상을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투자유치 촉진에 관하여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하여는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임원 규정 삭제(안 제4조)
- 나. 이사회 규정 삭제(안 제5조)
- 다. 사무국 규정 삭제(안 제6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6조 「민법」 제40조·제43조

2) 「지방자치법」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24.~2019. 1.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서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임원, 이사회,  
사무국, 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나.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시행 2014.9.25.]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시행 2015. 1. 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6호, 2015. 1. 30., 제정.]

1. 출연기관: 502개

구 분		기 관 명
경남	본청	경상남도청 소년종합지원본부,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시·군·구	(창원시)창원문화재단 / (진주시)(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통영시)통영국제음악재단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천시)사천문화재단,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김해시)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김해문화재단, (재)김해시복지재단 (밀양시)밀양시민장학재단 / (거제시)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양산시)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 (함안군)재단법인 함안군 장학재단 (창녕군)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고성군)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남해군)남해마늘연구소(재) / (하동군)하동군 장학재단, 하동녹차연구소 (산청군)산청한방약초연구소 / (거창군)거창군 장학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제주	본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 출자기관: 59개~생략~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7조(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안건번호	의 견 14-0075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회신일자	2014. 3. 26.
<p>•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를 두려고 하는데, 대구광역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의 임원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로 하는 것이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p> <p>• 이유 ~생략~</p>					

우선, 「민법」 제32조 및 제34조 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법률에 좇아 그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후에는 독립적 법인격을 갖춘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민법」 제37조, 제45조 등에 따라 그 사무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검사·감독을 받으며, 정관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생략~

그러나, 「민법」에 따르면 설립등기를 통하여 일단 법인이 성립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규정(제43조)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제66조) 하는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해당 재단법인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서 이사와 감사의 임면 절차를 새로이 정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법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조례안의 취지가 이미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것과는 달리 대구시조례안에 따른 임원의 추천 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둔 것이라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대구재단법인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대구시조례안의 내용과 대구재단법인의 정관이 배치될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 자체만으로는 그와 배치되는 정관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례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생략~

안건번호	의 건 17-0095	요청기관	전라남도	회신일자	2017. 5. 12.
------	----------------	------	------	------	-----------------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를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는 내용을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을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재단법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민법」 제43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6호와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법」 제43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제1호), 명칭(제2호), 사무소의 소재지(제3호),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제4호),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제5호),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제6호),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제7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8호),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제9호),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제10호),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제1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제1호),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3호)을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여수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제1호), 명칭(제2호), 사무소의소재지(제3호),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제4호),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제5호),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제6호),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제7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8호), 사업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제9호),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제10호),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제11호),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제12호),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공익법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

을 여수시조례안에 다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3. 15. 의견제시 16-0054 참조).

또한, 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여수시조례안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장학회의 정관 작성 및 기재 내용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므로, 공익법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 기재사항을 여수시조례안에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을 여수시조례안에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내에 대하여

「민법」 제43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공익법인은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수시장, 여수시의회의장,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하는 내용을 여수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여수시장, 여수시의회의장,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재단법인 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하는 내용을 여수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민법」 제43조 및 공익법인법 제3조제1항제6호와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한 공익법인법 제5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이사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자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의 이사가 정해지는 것이 되어 「민법」 및 공익법인법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6. 26. 의견제시 13-0191 참조).

따라서, 여수시장, 여수시의회의장,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재단법인 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민법」 제43조 및 공익법인법 제3조제1항

제6호와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한 공익법인법 제5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임원)**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개정이유

- 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규정과 개최실적이 없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2018. 12. 18.)으로 조례로 위임된 보조신청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 범위 삭제(안 제2조)
- 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조사업 신청절차 보완(안 제4조)
- 다. 유명무실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6조~제10조, 제13조). 임원 규정 삭제(안 제4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7.~1. 2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

##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여야 함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나.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2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삭제를 하고,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경비위원회 2년이상 운영 실적이 없어 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다.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법제처 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례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 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 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 치에 필요한 사업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 선 사업으로 규정함.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 단체"라한다)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 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 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는 바도 없는데, 이 조례에 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보조사업의 범위 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8.]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5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11. 7. 25., 2013. 1. 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 12. 29.>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 □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18.10.02]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2. 자문, 심의·의결 등 활동내역

3. 예산집행 내역

4.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현행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청 공무원 3명,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교육과의 교육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2.5.15)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부터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2009. 12. 30. 제정·시행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 25~2. 1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화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고,
- 나. 우리군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명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하기위한 목적으로 2009. 12. 30. 조례제정을 하였으나,
- 다.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특별회계 운용실적이 전무하고 전국 도·시·군·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8개 시·군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성시, 아산시, 전북 임실군, 전남 화순군)으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폐지 하고 있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과 실효성 이 없어 폐지하 려는 것으로 본 조례폐지와 관련된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 현행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9.12.30 조례 제19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고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고부가가치로 수익증대
2.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 및 합병
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4.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 및 변상금
3.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사무의 수입에 따른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 및 부동산 신탁수입금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속분
4. 제2호 및 제3호 외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입
5. 국·도비 보조금
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활용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의 취득
2.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3. 토지가치의 향상을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
4.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
5. 공유재산의 관리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제7조(금고의 지정)**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입에 예상 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등)**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의 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예산의 집행)**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사전 군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대장을 갖춰 두고 자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요구이유

-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기 위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와 민간위탁 시행

## 3. 주요내용

### 1) 센터현황

- 가. 시설명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나.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 ~ 2021. 12. 31.(3년)
- 다. 대상시설 : 31개소
- 라. 인력기준 : 3명(센터장 1, 직원 2)
- 마. 사업비 : 74,000천원 (국 37,000 도 11,100 군 25,900)  
※ 2020년부터 매년 100,000천원 규모로 운영

## 바. 위탁사무

-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과 식사 지도
-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생관리 지침과 위생교육 자료 개발
- 급식소 급식운영 지원과 정보제공·공유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센터시설의 설치 계획 방안 등

다. 자격요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FMS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라. 수탁기관 선정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3. 추진일정

- 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9. 4. ~ 5.
- 나. 위탁관련협약 체결과 공증 : 2019. 6.
-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2019. 8. ~ 9.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당초 예산 : 100,000천원
  - ※ 1회 추경 시 국·도비 감액으로 74,000천원으로 조정 계획
- 비용추계서 : <붙임 2>

## 5. 검토의견

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나.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 방문하여 위생·영양관리·식단 등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본 동의안은 식품전문가 공모를 통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관 계 법 령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보조

나. 관련 조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 전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50%, 도비15%, 군비 35%로 추진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을 따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입	군비	26	35	35	38	38	172
	국비	37	50	50	55	55	247
	도비	11	15	15	17	17	75
	소계(a)	74	100	100	110	110	494
세출	군비	26	35	35	38	38	172
	국비	37	50	50	55	55	247
	도비	11	15	15	17	17	75
	소계(b)	74	100	100	110	110	494

(1) 2019년도

- 비용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74백만원)
  - 인 력 :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인건비 : 29백만원/1,600천원×3명×4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 45백만원(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 비용추계 : 7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2) 2020년도

- 비용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100백만원)
  - 인 력 :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인건비 : 59백만원/1,640천원×3명×12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 41백만원(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 비용추계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다. 재원조달 방안 : 붙임

3. 기타 의견 : 없음

4. 작성자 :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원 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74	100	100	110	110	494
의존 재원	소 계	48	65	65	72	72	322
	국비 보조금	37	50	50	55	55	247
	도비 보조금	11	15	15	17	17	75
자체 수입	소 계	26	35	35	38	38	172
	지방세	26	35	35	38	38	17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의존재원(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재원 조달

## 3. 협의 사항

- 2019년 군비 26백만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군비 35백만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군비 38백만원 확보 요청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당해 부지 주변에는 거창고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최근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주택가가 확산되고 있으나
- 현재까지 주변에 공원시설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어린이공원 조성 등의 민원과 건의가 수차례 있는 곳으로
- 향후 거창읍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어린이 공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원 시설의 선제적 조성이 필요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0.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64번지 등 6 필지
- 토지면적 : 3,421m<sup>2</sup>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421	437,251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64	답	810	99,387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1	답	1,207	165,479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민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2	답	102	13,005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3	답	390	49,725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4	묘	99	12,177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5	전	813	97,478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 조

※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 다. 향후계획

- 2019.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9. 3월 :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 2019. 4월 :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를
- 2020. 1월 ~ 12월 : 도시공원 사업추진

## 라. 기대효과

- 거창읍 대동리 내 유휴지에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도시환경개선과 주민 편의제공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기여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 6. 현황사진(전경 1)



## 5. 검토의견

- 가. 지구 온난화로 폭염, 열대야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웰빙시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공원조성은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임.
- 나. 특히, 본 사업지구는 주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최근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동촌 저류지 공원과 연계하면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②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1. 제안이유

- 거창교 남단 군계획도로(중로2-17호선, 지방도1084호선)는 우리군 주간선 도로구간으로 차량통행량 대비 차로 폭 협소, 교통신호 등으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우심하여,
-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연접 토지, 지장건물의 매입)가 필요한 실정임.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거창읍 김천리 472-18번지 일원
- 총사업비 : 금1,250백만원(보상비 950, 공사비 300)
- 취득물건 : 토지(3필지) A=261m<sup>2</sup> 및 지장건물 2동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D=30.0m)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재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347,746	
매입	토지	거창읍 김천리 472-18	대지	142.0	107,792	김*태
매입	토지	거창읍 김천리 472-19	대지	50.0	37,955	정*희
매입	토지	거창읍 김천리 398-3	대지	69.0	38,799	정*희
매입	건물	거창읍 김천리 472-18	-	234.85	39,387	김*태
매입	건물	거창읍 김천리 398-3	-	241.7	123,813	정*희

※ 기준가격 : 토지(공지시가 × 면적), 건물(시가표준액)

## 다. 추진경과

- 2018. 3. ~ 5. :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2018. 6. ~ 7. : 관련 인·허가 협의 추진
- 2018. 9. ~ 12. : 편입물건 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수렴 등 협의
- 2019. 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라. 기대효과

- 거창읍 거창교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시가지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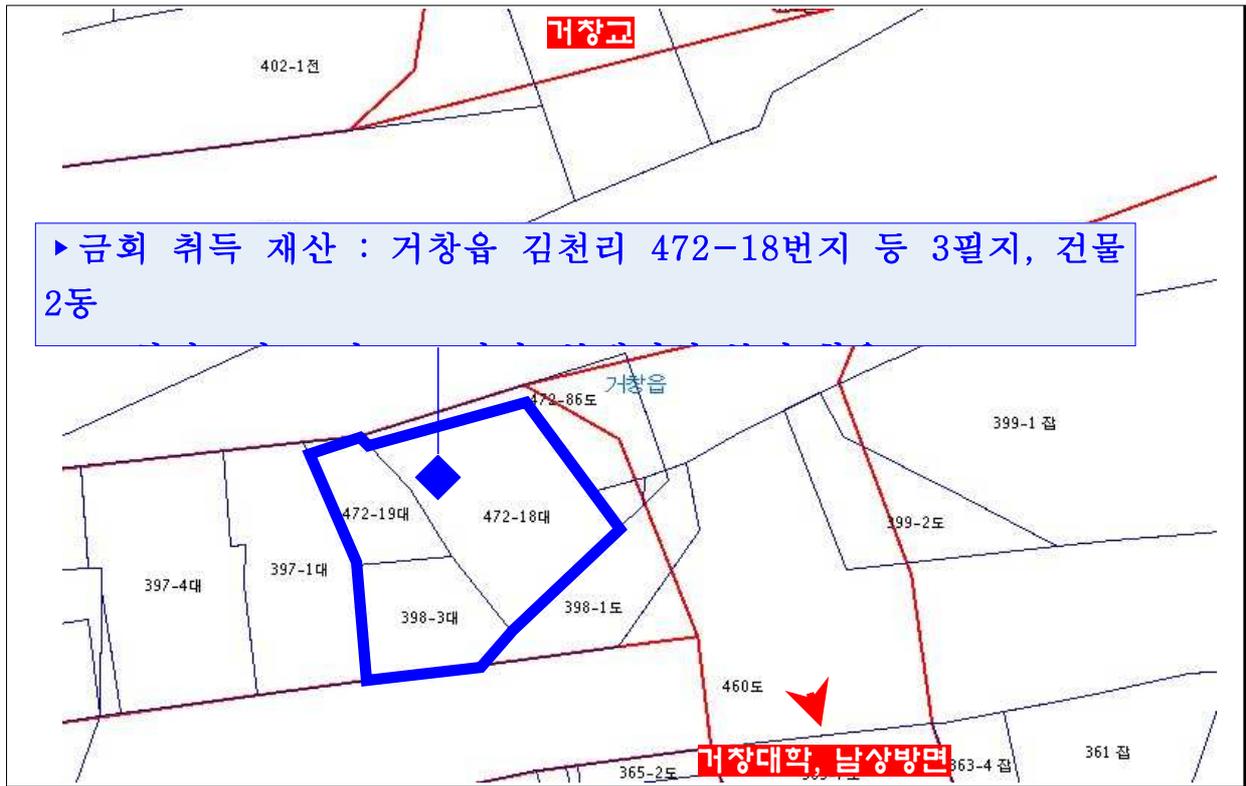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 4. 위치도



## 5. 지적현황



## 6. 현장사진



## 5. 검토의견

가. 거창교 남단 우리군 주간선도로구간으로 남상면 방향 거창대학, 문화센터, 박물관 등이 위치해 차량통행량 대비 차로 폭 협소, 교통신호 등으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우심하여

나.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구 일신한의원 등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관 계 법 령(요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계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 2. 요구이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목욕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 위생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 나. 사 업 량 : 목욕 차량 1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
- 다. 위탁대상 사무
  - 목욕차량 위탁운영(1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등 관리
- 라. 그간 운영상황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 쉼터 장애인 복지관

○ 위탁기간 : 2016. 3. 1. ~ 2019. 2. 28.

○ 위탁차량

차종	규격	차량번호	연식	비고
봉고3	특장탑차	99수1020	2011	

## 4.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사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을 받지 못한 불편 어르신들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위생 유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목욕차량의 운영이 필요함
- 매년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98%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음
- 담당부서의 업무과중과 이용자의 원활한 목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함

###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다. 향후일정

-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지정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관장 신정란)
  - 위탁기간 : 3년
  - 위탁내용 : 목욕차량(1대) 운행서비스 사무업무·관리 등

###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30,000천원

### 마. 위탁운영 계획안 : 붙임 참조

## 5. 검토의견

- 가.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위생을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나. 수혜자가 2015년 630명에서 2018년 96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다. 본 사업은 군 직영보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어 위탁만료에 따라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관 계 법 령(요약)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